

대한상공회의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설명



1. 개인정보보호법(구 정보통신망법) 의무화 개요

정보통신망법 개정 경과사항

- 2016.12.1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
- 2018.06.1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
- 2019.06.13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의무화 시행(보험/공제/적립금 중 택1)

2019년 말까지
과태료 유예

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내용

(정보유출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, 준비금 적립토록 의무화
(과태료 신설) 보험가입 등 미이행시 **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 부과

2. 의무가입 대상

의무가입 대상 업체

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	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	전기통신사업자(기간/별정/부가)	KT, SKT 등
		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자	쇼핑몰, 포털사이트 등
	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		이벤트 업체 등

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·앱·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(고객)정보를 보유한 사업자

2. 의무가입 대상

의무가입 면제 조건

- 1 개인정보가 저장·관리되고 있는 **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미만인** 경우 의무가입 면제
- 2 직전 사업연도 **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** 경우 의무가입 면제

※ 이용자수 일일평균

1. '이용자수'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"저장·보관"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
2. 이용자수 일일평균 = 10월, 11월,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÷ 92(일)

※ 매출액

1. 직전 사업연도 법인(기업)의 총 매출액
2.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기준

3. 보험 최저가입금액 기준

의무가입 면제 조건

매출액 이용자수	800억원 초과	50억원 초과 ~ 800억원 이하	5천만원 이상 ~ 50억원 이하	5천만원 미만
100만명 이상	10억원	5억원	2억원	면제
10만명 이상 ~ 100만명 미만	5억원	2억원	1억원	
1천명 이상 ~ 10만명 미만	2억원	1억원	0.5억원	
1천명 미만	면제			

4.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

신상품 개요

- 개요 : 개인정보보호법(구 정보통신망법)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전용상품
- 판매개시일 : 2019.07.21

신상품 약관 구조

- 보통약관 (보통약관만 가입하여도 의무사항 충족)
- 특별약관 (의무사항과 상관없이 자기손해(비용성) 담보 위해 선택 가입 가능)
 -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
 -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
 -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보장 특별약관

4.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

보상하는 손해

소유, 사용,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·분실·도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,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

※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: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금 및 제 39조 제3항에 따른 배액배상금 포함
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(단,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배상금에 한하여 파산의 경우에는 고의 담보)
- 신용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하여,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

4.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

주요 특별약관

-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
: 사고 발생 시, 전문가 컨설팅 비용 담보
-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
: 사고 발생 시, 조사비용 및 통지비용(위문품 포함) 담보
-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보장 특별약관
: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해 담보

- 위 특별약관 선택 시, 재보험자 협의요율 적용
- 위 특별약관의 경우, 별도의 보상한도 적용

5. Q&A

Q. 비영리기관인 병원, 학교 등도 의무가입 대상?

- A. 대학교 및 병원의 경우라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그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,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함

Q. 일일평균 이용자수 산정 방법?

- A. 순방문자수나 페이지뷰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저장한 이용자의 수(개인정보 보유량)

5. Q&A

Q. 오프라인/온라인 사업 병행할 경우, 이용자수는 온라인 사업의 이용자수만 산정?

A.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온라인·오프라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,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수 전부가 포함